

인천지방법원 2022. 11. 30 선고 2022가단2296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2. 11. 9.

판 결 선 고 2022. 11. 30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19. 6. 2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소외 F 주식회사(이하 'F'라 한다)는 소외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69552호로 E에 대한 대출금채권(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, 위 법원은 2013. 4. 13. E에게 'E은 F에게 2,551,781원 및 그중 2,290,648원에 대하여 2013. 4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.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지급명령(이하 '이 사건 지급명령'이라 한다)을 발령하였고,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. 4. 22. E 본인에게 송달되어 2013. 5. 7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F는 2013. 6. 28. 소외 G 주식회사(이하 'G'라 한다)에 F의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(2013. 6. 28. 기준 미상환원리금 2,757,939원)을 양도하고, 2013. 7. 3.경 E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,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E에게 도달하였다.

다. 이후 G는 2017. 9. 11.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, 2017. 10. 10.경 E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,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E에게 도달하였다.

라. E의 부(父)인 망 H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및 자녀들인 I, J, E은 2019. 6. 29.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하였다.

마. 피고는 2021. 1. 29.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바. E의 상속지분은 2/9이고, E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, 8 내지 1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G로부터 양수받은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F의 E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 발생한 때인 2012. 5. 17.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인정되나, 한편 F가 E를 상대로 하여 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. 4. 13. 위 대출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3. 5. 7. 확정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, 그로부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그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,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).

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E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(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뿐, 이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며 다투고 있지는 않다),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E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어 재산분할결과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,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E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,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,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E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피고가 몰랐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.

라.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

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법정상속분인 2/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2/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고범진

